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(안 제13조제2항) 기존 위탁 기간 3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조례 기준 5년 이내로 맞추는 것으로, 조례 체계의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함.
- (경과조치, 적용례) 개정 전 체결된 위탁계약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고, 개정 규정은 신규갱신 계약부터 적용하여 법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.

나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위탁 기간 기준을 상위 조례와 일치시켜 민간 위탁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, 조례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없음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5. 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